



상주시의회 공고 제2023-18호

「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상주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7월 11일

상 주 시 의 회 의 장



「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안 예고

1. 제안이유

- 가. 상주시 사무를 민간위탁하는데 있어 집행부 계획수립 및 예산편성 이후 의회 의결의 순으로 이루어지므로 추진절차 상 조례 위반의 소지를 없애고자 함.
- 나. 개별 조례에서 사무의 민간위탁의 근거를 밝힌 경우에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 민간위탁하도록 면책 조항을 삭제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 범위를 명확화하고자 함.

2. 주요개정내용

- 가. 제6조(의회 동의) 제1항 본문 중 “예산편성 전에” 문구 삭제
- 나. 같은 항 제1호(1.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한 경우)를 삭제
- 다.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변경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7월 16일까지 상주시의회 의장(참조: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제·개정 (안)	수 정 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단체일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1) 전자우편: lkj78@korea.kr

2) 주 소: (우37183) 상주시 중앙로 111, 상주시의회

3) 팩 스: 054-535-9854 (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)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(전화:

054-537-7847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

제정안은 상주시의회 홈페이지(<https://www.sangjucouncil.go.kr/>

⇒ 의정소식 ⇒ 입법예고)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: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:

자치법규안 내용	의견	비고